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공작물의 높이를 최대 12m로 제한하고 있어 재해예방 및 여가공간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을 설치하는데 제한이 발생함에 따라, 일부 행위허가 대상 공작물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 하에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안전을 제고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내용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 폐지 등, 없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지가변동률과 생산자물가상승률

별표 3 제2호다목 본문 중 “3층”을 “층수는 3층”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에 따른다.

별표 3 제2호에 각 세세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궤도 또는 같은 표 제1호사목에 따른 방재시설로서 공익을 위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 입지가 불가피하다고 시·도도시공원위원회 또는 시·군도시공원위원회(시·도도시공원위원회 또는 시·군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에서 인정하는 공작물: 높이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되, 주변 미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2)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높이는 최대 22

미터, 층수는 2층 이하로 하고, 주변 미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 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2호다목(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및 산정방법) ①법 제30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매수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표준지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기준으로 그 공시기준일부터 매수청구인에게 이를 지급하고자 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변동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제36조(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및 산정방법) ①-----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지가변동률과 생산자물가상승률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지가변동률과 생산자물가상승률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연 락 처	(044) 201 - 3751